

소송상에서의 중국 소수민족의 언어문자사용권을 논함*

- 연변 조선족 언어문자사용권을 겸하여 논함 -

엄 해 옥**

목 차

- | | |
|-----------------------|------------------------|
| I. 들어가는 말 | III. 소수민족의 언어문자소송권의 보장 |
| II. 소수민족의 언어문자사용권의 보장 | 1. 소수민족의 언어문자소송권 |
| 1. 소수민족지역자치권 | 2. 연변조선족의 언어문자사용권 |
| 2. 소수민족의 언어문자사용권 | 3. 연변조선족의 언어문자소송권 |
| | IV. 나가는 말 |

I. 들어가는 말

중국은 통일된 다민족 중앙집권제국가이다. 56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55개 민족은 소수민족이다. 많은 소수민족집거지역에서는 자치기관을 설립하고 자치권을 행사하면서 자기민족의 사무를 처리하는 소수민족지역자치를 실시하고 있다. 1947년에 내몽골자치구가 건립된 이래 전국적인 범위에서 5개 자치구, 30개 자치주(盟), 120개 자치현(旗)이 설립되었다. 중국 소수민족 인구는 전체 인구의 9%를 차지하지만 소수민족집거지역에 건립된 민족자치지역은 중국 국토 면적의 64%를 차지한다.

* 이 글은 2010년 한국국제교류재단, 2011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해외한국학지원사업, 2012년 중국길림성사회과학원의 지원사업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중국연변대학법학원 부교수

국제사회에서 소수민족 인권보호 범위는 대체로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소수민족에 대한 평등대우와 차별을 없애는 원칙에서 타인 혹은 기타 민족과 함께 각종 인권을 향유시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소수민족들이 특수보호원칙에 의해 자기 민족의 특징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특수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¹⁾ 역사적 원인과 지정학적 원인으로 중국의 소수민족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볼 때 정치, 경제, 문화 등에서 발전이 느리며 소수민족지역간의 발전도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중국에서는 민족 간의 경제, 문화 등 여러 면에서 생기는 거리감을 줄이고 약소민족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소수민족자치지역을 설립하고 소수민족지역자치를 실행하면서 소수민족들로 하여금 자치권을 행사하게 한다.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할 것 없이, 또 어느 시대의 소송이든 혹은 어느 나라의 소송이든 언어와 문자사용이 필요하다. 문제는 약소민족의 언어문자에 대한 사용과 그 보장이다. 중국소수민족들은 ‘헌법’과 ‘소수민족지역자치법’(이하 ‘민족자치법’으로 약칭) 그리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등 법에 의해 언어문자사용권을 보장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문자소송권도 보장받고 있다.

민족자치법은 헌법의 구성부분인 동시에 민족자치지역의 기본적인 법률이기도 하다. 중국조선족들과 관련하여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설립되어 있다. 그들은 ‘연변조선족자치주자치조례’(이하 ‘연변조선족자치조례’로 약칭)와 ‘연변조선족자치주조선언어문자사업조례’(이하 ‘연변조선족언어문자조례’로 약칭)를 제정하여 자기 민족의 언어문자로 정치, 경제, 문화 등 활동에 참가할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에서도 언어문자사용권과 언어문자소송권을 보장받고 있다.

1) 爱如娜, “少数民族诉讼语言文字权的法律保护”, 内蒙古农业大学学报 第1期(2011), 32쪽.

Ⅱ. 소수민족의 언어문자사용권의 보장

1. 소수민족의 지역자치권

중국에는 3개의 행정지역이 병존하고 있다. 첫째, 일반적인 행정지역인 성(省)(자치구, 직할시), 현(縣)(자치주, 자치현, 시), 향(鄉)(민족향, 진)이다. 주요하게는 한족(漢族)과 다민족이 잡거(雜居)한 지역이다. 둘째, 특별행정지역인 홍콩, 마카오로서 특수한 법률지위와 정치, 경제제도를 실시하는 행정지역이다. 셋째, 소수민족자치지역인 자치구, 자치주(盟), 자치현(旗)으로서 소수민족 집거(集居)지역에 건립한 행정지역이다. 바로 소수민족자치지역을 말한다.

중국공산당은 공화국이 성립하기 전부터 소수민족자치를 주장하였다. 1931년에 제정한 ‘중화소비에트공화국헌법대강’에는 ‘소비에트정권은 이러한 민족²⁾ 중에서 ‘그들의 민족 문화와 민족 언어를 발전시켜야 한다.’³⁾는 규정이 있다. 1938년 11월에 모택동은 ‘중공 6기 중앙위원회 제6차회의’ 보고에서 “각 소수민족은 한족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동등한 원칙에서 자기의 사무를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한족과 연합하여 통일된 국가를 건립할 수 있다.”⁴⁾고 언급하였으며 1949년 9월 29일에 ‘중화인민공화국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⁵⁾(이하 ‘공동강령’으로 약칭)을 제정하였다. 제7장 제60조로 된 공동강령은 헌법은 아니었지만 법률효력을 따져보면 헌법의 특징을 갖고 있었고 헌법의 작용을 일으켰다. 공동강령 제51조는 “각 소수민족집거지역은 반드시

2) 소수민족을 가리킴.

3) 金柄镐(1), 民族纲领政策文献选编(第一编)(中央民族大学出版社, 2006), 90쪽.

4) 周叶中, 宪法(高等教育出版社, 2010), 229쪽.

5) 1949년 9월 29일에 중국인민정치협상회 제1기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제1장 총강, 제2장 정권기관, 제3장 국사제도, 제4장 경제정책, 제5장 문화교육정책, 제6장 민족정책, 제7장 외교정책이다.

민족자치를 실행해야 하며 민족집거의 인구와 지역의 대소에 따라 각 민족의 자치기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중앙 인민정부정무원⁶⁾은 ‘민족지역자치실시강요’와 기타 민족사업에 관한 법률문건을 제정하여 민족지역자치의 기본원칙, 자치구의 획분, 자치기관의 설치, 자치기관의 자치권, 자치구내의 민족관계와 상급인민정부의 영도관계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 건국초기, 중국은 소수민족집거 지역에 부동한 민족자치지역들을 세웠다. 이러한 민족자치지역의 행정 지위는 달랐지만 모두 ‘민족자치지역’이라 불렀다.⁷⁾

소수민족지역자치에 관하여 1954년에 제정한 헌법에는 간단한 규정이 있었고 1982년에 제정한 헌법에는 명확한 규정을 두었으며 1984년에 제정한 민족자치법에서는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 헌법 서언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전국 각 민족인민이 공동으로 제조한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제4조 3항에는 “각 소수민족이 집거한 지역에서는 지역자치를 실시하며 자치기관을 설립하고 자치권을 행사한다. 각 민족자치지역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의 불가분리의 부분이다.”고 규정하였다. 민족자치법은 서언에서 “민족지역자치는 국가의 기본정치제도중의 하나이다.”라고 밝혔고 “민족지역자치는 국가의 통일적인 영도 하에 각 소수민족이 집거한 지역에 지역자치를 실시하며 자치기관을 설립하고 자치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였다.

민족자치법은 헌법의 규정을 실시하는 민족지역자치제도에 대한 기본 법률이다. 중국의 소수민족들은 민족자치법에 의해 자치권을 행사하면서 자기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의 사무를 처리하였다.

6) 중앙인민정부정무원(Government Administration Council of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은 1949년부터 1954년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정부의 최고집행 기관이었다.

7) 周叶中, 위의 책, 229쪽.

민족자치법에서 언급하는 중국소수민족자치제도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수민족자치지역은 중국영토의 일부분으로서 하나의 행정지역일 뿐이지 절대 연방국가에서 말하는 성원단위가 아니다. 소수민족자치제도가 있고 민족자치지역에 자치기관이 있음으로 하여 소수민족들은 자치기관에서 자치권을 행사할 따름이다.

둘째, 역사적으로 중국소수민족들은 대잡거(大雜居), 소집거(小集居)의 형식으로 생활하여 왔다. 소수민족지역자치는 반드시 소수민족지역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민족자치와 지역자치가 결합되어야 한다. 이것은 소수민족자치지역을 건립하는 전제조건으로 된다.

셋째, 소수민족자치기관은 헌법과 민족자치법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자치권을 행사하면서 자기민족과 자기민족지역의 사무를 관리한다. 민족자치기관은 1급 지역국가기관이며 모두 상급국가기관의 영도를 받는다. 소수민족지역자치를 실행하는 민족의 공민이 자치구주석, 자치주주장, 자치현현장을 담임한다.

넷째, 자기 민족의 언어문자를 사용한다.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중에서 53개 민족은 자기의 언어를 갖고 있다. 소수민족들은 자기의 언어문자를 사용하면서 자기민족의 사무를 관리한다.

다섯째, 지방성법규⁸⁾, 자치조례와 단행(單行)조례⁹⁾를 제정한다. 민족자치지역의 인민대표대회에서는 당지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

8) 지방성법규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성과 자치구인민정부소재지의 시와 국무원에서 비준한 비교적 큰 시(唐山市, 大同市, 包头市, 大连市, 鞍山市, 抚顺市, 吉林市, 齐齐哈尔市, 青岛市, 无锡市, 淮南市, 洛阳市, 宁波市, 淄博市, 邯郸市, 本溪市, 苏州市, 徐州市)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에서 헌법과 법률 그리고 행정법규와 충돌되지 않는 정황에서 제정, 반포하는 규범성문건의 총칭이다.

9)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민족자치지역의 인민대표대회가 헌법과 민족자치법 그리고 기타 법률규정의 권한 내에서 당지의 정치·경제·문화의 특징에 따라 제정한 규범성 문건의 총칭이다.

점에 따라 중국헌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소수민족지역자치제도의 실시와 함께 중국의 소수민족들은 자기의 자치권을 행사하면서 본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면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1958년에는 민족의 발전과 소망문제에서 ‘민족융화론’이 나타나 일방적으로 공성을 강조하고 민족지간에 존재하는 차이를 부정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강박적으로 소수민족들의 생활습관을 개변시키려 하였다. 60년대 초, 이론상에서 또다시 ‘민족문제는 어디까지나 계급투쟁문제이다.’라는 의론이 제기되면서 착오적으로 통전(統戰)사업과 민족사업을 비판하고 민족문제를 확대화하여 많은 민족간부와 민족지식분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문화대혁명¹⁰⁾ 시기, ‘4인방’¹¹⁾은 민족자치제도는 인위적인 ‘민족분열’이라 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민족자치지역을 철수시키거나 합병시키는 일들이 나타났다.¹²⁾

중국의 소수민족지역자치제도는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제도이며 국가의 중요한 정치제도로써 국가의 통일적인 영도에서 각 민족이 집거한 지역에 자치기관을 설립하고 자치권을 행사하면서 실시하는 소수민족지역자치제도를 가리킨다. 소수민족자치지역의 정부기구는 기타 지방성행정기관과 동등한 직권을 가진다. 이는 헌법과 소수민족자치법이 소수민족자치지역에 부여한 권리이다.

2. 소수민족의 언어문자사용권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언어와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면서 문명을 만들고 문명을 전달해 왔기에 매개 민족의 언어문자는 민족의 풍속습관

10) 1966년부터 1976년까지이다.

11) 장청(江青)과 왕홍원(王洪文)·장춘차오(張春橋)·야오원위안(姚文元)을 가리킨다.

12) 吳杰, 憲法教程(法律出版社, 1993), 128쪽.

그리고 종교 신앙과 마찬가지로 존경과 보장을 받아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전후부터 세계는 인권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인간의 언어문자사용권에 대해 한층 더 중시를 돌리기 시작하였고 존중해 주기 시작하였다.

1945년에 제정한 ‘유엔헌장’ 제1장 제1조 3의 내용을 보면 “경제적·사회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사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인권 및 기본적 사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는 규정이 있고 1948년에 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2조에는 “모든 인간은 인종·피부색·성·언어·종교·정치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재산·출생 또는 다른 지위 등과 같은 그 어떤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한 사람이 속한 나라 또는 영토가 독립국이건 신탁통치지역이건, 비자치지역이건 또는 그 밖의 다른 어떤 주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곳이건, 그 나라나 영토의 정치적·사법적·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자행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다.

공동강령 제53조는 “각 민족은 모두 자기의 언어문자를 발전시키고 풍속습관과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존하고 개혁할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1951년 2월 25일에 정무원은 ‘민족사무에관한중앙인민정부정무원의몇가지규정’을 제정하여 “아직까지 문자가 없는 민족에게는 문자를 만들어 주고 문자가 완벽하지 못한 민족들을 방조하여 문자를 충실하게 해 준다.”¹³⁾고 규정하였다.

중국은 다민족, 다언어, 다문화 국가이다. 1956년부터 중국에서는 10개 소수민족을 도와 14종의 병음문자를 만들어 주고¹⁴⁾ 위글족, 하사크족을 도와 문자를 개혁하고 타이족(傣族), 라후족(拉祜族), 징피족(景颇

13) 金柄镐(1), 앞의 책, 446쪽.

14) 壮文, 布依文, 苗文(4种), 彝族, 黎文, 纳西文, 傈僳文, 哈尼文(2种), 侗文, 佤文.

族)을 도와 문자를 개진하였다. 새롭게 만들어진 문자들은 대부분 시행 혹은 추행되었거나 지금 시행 혹은 추행 중에 있다. 개혁 혹은 개진된 문자는 일부는 사용 중이고 일부는 사용정지가 되어 원래의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¹⁵⁾ 55개 소수민족 중에서 회족(回族)과 사족(畚族)은 줄곧 한어(漢語)¹⁶⁾를 사용하였고 만족(滿族)은 근대에 이르러 한어(漢語)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기타 52개 민족은 모두 자기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 현행 사용되고 있는 소수민족문자는 27종에 달한다.¹⁷⁾

한어는 국제상에서 중화민족을 대표하는 언어로서 유엔에서 사용하고 있는 6개 언어 중의 하나이다.¹⁸⁾ 하지만 중국공산당은 공화국을 성립하기 전부터 민족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을 새 중국의 건설과 발전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로 여기면서 소수민족들의 문명과 발전, 나아가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수민족언어문자사용권을 보장해 왔다.

중국은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의 서명국이다. 반세기 남짓한 동안 중국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공동강령’과 정무원에서 제정한 규정 외 헌법과 민족자치법 그리고 ‘선거법’, ‘조직법’, ‘교육법’ 등 많은 법률과 조례들을 제정하여 소수민족들의 언어문자사용권을 보장해 주면서 그들의 사회지위와 법률지위를 확보해 주었다.

2.1 헌법과 민족자치법

1954년에 제정한 헌법 제71조는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직무집행 시 당지에서 통용되고 있는 하나 혹은 여러 가지 언어문자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1982년에 개정된 헌법 제4조는

15) 金柄镐(2), 民族理论通论(中央民族大学出版社, 2007), 567쪽.

16) 중국어를 가리킨다.

17) 吴宗金, 中国少数民族区域自治法学(法律出版社, 2012), 178쪽.

18) 傅懋勳 / 孙竹, “关于使用和发展民族语言文字的问题”, 民族研究 第3期(1990), 3쪽.

“각 민족은 모두 자기의 언어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였고 제121조에서는 “민족지역의 자치기관은 직무집행 시 자기 민족자치지역의 자치조례의 규정에 따라 당지에서 통용되는 하나 혹은 여러 가지 언어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민족자치법은 제10조에서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본 지역의 각 민족들이 모두 자기의 언어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소수민족교육에 관하여 제21조에서는 “민족자치지역의 자치기관은 직무집행 시 본 민족자치지역의 자치조례의 규정에 따라 당지에서 통용되는 하나 혹은 몇 가지 언어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직무집행 시 몇 가지 언어문자가 동시에 통용되면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언어문자를 위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37조에서는 “민족지역의 자치기관은 자주적으로 민족교육을 발전시키고 문맹퇴치를 해야 한다. 여러 유형의 학교를 세우고 9년제 의무교육을 보급시켜야 한다. 각종형식의 고급, 중등교육과 중등전업기술교육을 발전시키고 조건과 수요에 따라 고등교육¹⁹⁾을 발전시켜 각 소수민족들의 전업인재를 양성시켜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다.

2.2 선거법, 조직법, 교육법

1955년에 제정한 ‘전국인민대표대회와지역각급인민대표대회선거법’ 제22조는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에서 제정 혹은 공포한 선거문건, 선민명단, 선민증, 대표후선인명단, 대표당선증서와 선거위원회의 인장 등은 모두 반드시 당지에서 통용되고 있는 민족문자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19) 대학교 교육을 가리킴.

1982년에 개정한 조직법 제19조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회의를 거행할 때 응당 소수민족대표를 위해 필요한 번역을 준비해야 한다.”고 규정을 짓고 있다.

1995년에 제정한 교육법 제12조는 “한어언문자(漢語言文字)는 학교 및 기타 교육기구의 기본강의의 언어문자로 한다. 소수민족학생이 주인 학교 및 기타 교육기구는 본 민족 혹은 당지 민족들이 통용하는 언어문자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 학교와 기타 교육기구에서 진행하는 강의는 응당 전국에서 통용되는 표준어와 규범문자를 보급시키고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2.3 언어문자법과 언어문자조례

2000년에 제정한 ‘국가통용언어문자법’ 제8조는 “각 민족은 모두 자기의 언어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를 가지고 있다. 소수민족언어문자의 사용은 헌법, 민족지역자치법 및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거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개혁개방 후, 소수민족자치지역에서는 본 민족의 특성에 맞는 언어문자사업조례들을 제정하면서 중국의 소수민족언어문자보장권을 한층 더 법제화시켰다. 예컨대, 1987년 7월 9일에 서장장족자치구에서 제정한 ‘서장자치구장족언어문자사업조례’, 1988년 1월 11일에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제정한 ‘연변조선족언어문자조례’, 1993년 9월 25일에 신강위글족자치구에서 제정한 ‘신강위글족자치구위글족언어문자사업조례’, 2004년 11월 26일에 내몽골자치구에서 반포한 ‘내몽골자치구내몽골언어문자사업조례’이다. 이 외에도 많은 소수민족자치지역의 언어문자조례들이 있다.²⁰⁾

20) ‘阜新蒙古族自治县蒙古语文工作条例’, ‘海南藏族自治州藏语文工作条例’, ‘海西蒙古族藏族自治州蒙古族藏语文工作条例’, ‘杜尔伯特蒙古族自治县蒙古语文工作条

중국의 55개 소수민족의 언어문자사용권은 주요하게 두 개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자치기관이 선정한 언어문자는 반드시 본 민족지 역자치조례에서 제정한 당지에서 통용되는 언어와 문자이어야 한다. 둘째, 직무집행²¹⁾ 시 당지에서 몇 가지 언어문자가 통용되는 경우 자치기관은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언어문자를 주 언어로 사용해야 한다.

반세기를 넘기면서 중국에서는 민족지역자치제도를 실시하고 민족 언어문자사용의 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첫째, 소수민족언어문자조사대를 조직하여 각 소수민족의 언어간지(言語簡志)를 편찬하였다. 둘째, 일부 소수민족을 도와 문자를 만들어 주고 개혁해 주었다. 셋째, 모어(母語)강의와 쌍어(雙語)강의를 진행하였다. 넷째, 소수민족언어문자연구의 발전을 중시하고 인재양성에 중시를 돌렸다.²²⁾ 그 성과들은 본 논문의 2.2.와 3.에서 충분히 알려진다.

매개 민족의 언어문자사용에는 법률의 제정과 보호로 된 준수와 실시가 있으면 그 언어나 문자는 사회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한층 더 나타낼 수 있다. 중국조선족은 조선반도에서 이주해 온 민족이다. 법률화 된 언어문자사용권의 보장은 조선족으로 하여금 중국에서는 물론

예, ‘凉山彝族自治州彝族语言文字工作条例’, ‘黄南藏族自治州藏语文工作条例’, ‘果洛藏族自治州藏语文工作条例’, ‘马边彝族自治县彝族语言文字条例’, ‘海北藏族自治州藏语文工作条例’, ‘峨边彝族自治县彝族语言文字条例’, ‘甘肃省甘南藏族自治州藏语言文字工作条例’, ‘玉树藏族自治州藏语文工作条例’, ‘肃北蒙古族自治县蒙古语言文字工作条例’, ‘前郭尔罗斯蒙古族自治县蒙古语言文字工作条例’, ‘甘孜藏族自治州藏语言文字使用条例’, ‘喀喇沁左翼蒙古族自治县蒙古语文工作条例’, ‘甘肃省天祝藏族自治县藏语言文字工作条例’, ‘甘肃省阿克塞哈萨克族自治县哈萨克语言文字工作条例’, ‘巴音楞蒙古自治州语言文字管理条例’.

21) 직무집행은 자치기관이 본 민족지역 내의 업무와 활동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자치기관과 상급국가기관의 업무연계활동도 가리킨다.

22) 金柄镐(2), 앞의 책, 568쪽.

동아시아에서 정치, 경제, 문화 등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게 하였고 중국소수민족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주게 되었다.

Ⅲ. 소수민족언어문자소송권의 보장

1. 소수민족의 언어문자소송권

소수민족 언어문자소송권은 소수민족 소송관계인들이 자기민족의 언어뿐만 아니라 문자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으며 소수민족 언어문자가 수사, 기소, 재판, 집행 등 소송과정에 사용됨을 말한다. 중국에서는 헌법과 민족자치법 뿐만 아니라 중국의 3대 소송법인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그리고 조직법에서도 소수민족자치지역의 소송관계자와 법원은 자기민족의 언어문자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소수민족들의 정치지위와 법률지위에 대한 보장이며 따라서 소수민족 소송관계자들의 소송권에 대한 보장으로 된다.

헌법 제134조의 규정을 보면 “각 민족공민은 모두 자기 민족의 언어문자로 소송을 진행할 권리를 갖고 있다.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당지에서 통용하는 언어문자에 능통하지 못한 소송관계인에게 응당 번역을 해 주어야 한다. 소수민족집거 혹은 다민족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응당 당지에서 통용하는 언어문자를 사용하여 심리해야 하며 기소서, 판결서, 포고와 기타 문서는 응당 실체수요에 따라 당지에서 통용하는 한 가지 혹은 몇 가지 언어문자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민족자치법 제47조는 “민족자치지역의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응당 당지에서 통용되고 있는 언어로 사건을 심리, 검찰해야 하며 동시에

당지에서 통용하는 소수민족들의 언어문자에 능통한 인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당지의 언어문자에 능통하지 못한 소송관계인에게는 응당 번역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법률문서는 응당 실제수요에 따라 당지에서 사용되는 하나 혹은 여러 가지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각 민족 공민들이 자기민족의 언어문자를 사용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1조와 행정소송법 제8조는 “각 민족공민은 모두 자기 민족의 언어문자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소수민족이 잡거 혹은 다민족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인민법원은 응당 당지민족들이 통용하는 언어문자로 심리하고 법률문서를 발포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응당 당지민족들이 통용하는 언어문자에 능통하지 못한 소송관계인에게 번역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형사소송법 제9조는 “각 민족 공민은 모두 자기 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해당 지역에서 통용되는 언어와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소송관계인을 위하여 통역을 하여야 한다. 소수민족이 군거(群居)하거나 다민족이 잡거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당지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사용하여 심문하며, 당지에서 통용되는 문자를 사용하여 판결서, 포고와 그 밖의 문서를 공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법규들에서 소수민족 언어문자 사용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로 귀납할 수 있다.

첫째, 소수민족자치지역의 소수민족 소송참가자들은 소송관계자, 변호인, 증인, 감증인 할 것 없이 모두 자기 민족의 언어로 진술하고 변론할 수 있으며 자기 민족의 문자로 소장을 만들 수 있다.

둘째, 법원과 검찰원은 소수민족집거지역 혹은 다민족잡거지역에서 사건을 심리할 때 당지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수사, 기소, 심판을 해야 하며 당지에서 통용되는 문자로 판결서, 공고, 포고와 기타 문건을 작성

해야 한다.

셋째, 소수민족 소송참여자가 당지에서 통용되는 언어문자에 능통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면 법원과 검찰원은 번역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넷째, 민족언어문자의 사용은 직접적으로 여러 민족의 권익과 사회의 안정에 관계되기에公安, 법원과 검찰원은 소수민족 소송관계자들에게 언어문자사용의 권리를 고지해 주어야 한다.

언어문자사용권은 자기민족의 언어문자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권한을 말하며 언어문자소송권은 소수민족들이 자기의 민족 언어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말한다. 소송에서 언어문자의 장애로 그 누구도 손해를 입거나 침해할 당해서는 아니 된다. 소송에서 소수민족 언어문자사용권에 대한 사용과 보장은 소수민족들의 법제의식에 대한 보장과 제고로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사법기관의 활동에 대한 감독으로도 되고 있다.

2. 연변조선족의 언어문자사용권

2.1 조선이주민들의 언어문자사용

광복 전, 조선이주민들이 연변에 세운 학교들로는 동흥중학교, 대성중학교, 은진중학교, 영신중학교 등이다. 여러 학교에서 사용한 교과서로는 1913년 이동휘, 계봉우 등 애국지사들이 국자(연길)가 광성학교에서 조선어 역사, 지리, 수신, 창가 등의 교과서를 편찬하여 등사한 것을 먼저 이야기하게 된다. 후에 동북각지의 조선족학교에서는 반일 애국사상이 담긴 이 교과서를 등사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²³⁾ 당시, 연변에서 발간된 조선어로 된 신문은 ‘대성단보’(大成團報)(1910년 7월 1일에 국

23) 崔相哲, 中国朝鲜族新闻出版研究(香港亚洲出版社, 2007), 56쪽.

자가에서 창간²⁴⁾와 ‘한민일보’(韓民日報)(1945년 9월 18일 연길에서 창간. 34호를 발간하고 그해 11월 4일에 폐간하였다.)²⁵⁾가 있다.

일본은 중국을 침략하는데 있어서의 후방기지인 동북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대량의 군대를 동원하여 동북항일부대를 ‘토벌’하는 한편 ‘만선일보’를 비롯한 조선문 어용신문을 발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말 방송도 시작하였다. 1938년 4월 1일 당시 간도성(間島省) 소재지인 연길에 연길방송국이 세워졌으나 1940년 1월 5일에 폐지되었다. 이유는 저들의 교육제도와 보조를 같이 하자면 조선인도 일본말방송을 들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본질은 조선사람²⁶⁾의 말과 글을 빼앗고 조선사람들을 영원히 일제의 노예로 만들자는데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어용방송마저도 조선말로 내보내지 못하게 하였던 것이다.²⁷⁾

광복 후,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조선족 간부들을 배양하기 위하여 많은 간부학교를 세웠다. 1946년, 용정의 동북군정대 학길림분교는 5지대지도대(支隊指都隊), 화전군정학교(樺甸軍政學校), 길동군정대학(吉東軍政大學), 길료군정학교(吉遼軍政學校)가 합병되어 성립되었는데 2천여 명의 학원(學員)을 가지고 있었다. 이 학교에서는 많은 조선족 당정군(黨政軍)간부들을 배양하였다. 1946년 9월, 길림성인민정부에서는 연길에 민주학원을 세우고 행정계, 교육계, 재정계, 공업계를 설치하였는데 도합 1천여 명 학원(學員)이 있었다. 이 학교는 1948년 3월 성정부(省政府)²⁸⁾가 연길을 떠나기 전까지 있었다. 이 1년 반 동안 본 학원에서는 많은 구(區), 촌(村)의 기층간부와 중소학교²⁹⁾교

24) 崔相哲, 위의 책, 3쪽.

25) 崔相哲, 위의 책, 21쪽.

26) 당시의 조선이주민을 가리킨다.

27) 崔相哲, 위의 책, 40-41쪽.

28) 1946년 6월, 중국공산당 길림성위원회(원 명칭은 길료성위원회)가 연길로 옮겨왔다(崔相哲, 위의 책, 42쪽).

29) 중등학교와 초등학교를 가리킴.

사 및 기층재정, 공업학교의 간부들을 양성하였다. 1948년에 연변정치 간부학교를 세워 많은 당정군단조직(黨政群團組織)의 간부들을 배양하였다(이 학교는 1956년에 중공연변주위당학교(中共延邊州委黨學校)로 되었다.).³⁰⁾

1945년 11월 5일에 연길에서 발간한 신문은 ‘연변민보’(延邊民報)³¹⁾ (1946년 5월까지 104호를 발간하고 폐간하였다.)와 1948년 4월 1일 ‘길림신문’ 조선문판이 폐간되면서 중국공산당연변지구위원회의 기관지로 발간된 ‘연변일보’(延邊日報)가 있다³²⁾. 1946년 6월 14일 부터 ‘연길 신화방송국’을 내왔다. 연길신화방송국은 중국공산당 길림성위원회 선전부의 직접적인 영도 하에 주로 한족말 프로그램을 꾸리면서 조선말 프로그램도 내보내었다. 그때 조선말방송시간은 50분 정도였는데 주로 섬복신화방송국의 프로그램을 번역방송하면서 지방소식과 문예프로그램을 자체로 만들어 내보내었다. 이는 광복 후 중국에서 가장 먼저 소수민족언어로 진행한 방송이다. 이렇게 ‘연변인민방송국’이 첫걸음을 내디뎠다.³³⁾ 그 뒤로 연길에서 1947년 3월 24일 ‘연변교육출판사’가 성립되었다.³⁴⁾

대개 국가에서 허용되는 소수민족들의 언어문자사용권에 대한 보장은 단지 문화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치제도와 법률제도에서 표현되고 있다. 조선이주민들은 일제통치시기를 경과하면서도 자기민족의 언어문자를 보존하여 왔기에 공화국이 성립된 후 자기민족의 언어문자사용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자기의 언어문자를 사용하면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30) 延边朝鲜族自治州概况编写组, 延边朝鲜族自治州概况(延边人民出版社, 1984), 112쪽.

31) 崔相哲, 앞의 책, 22쪽.

32) 崔相哲, 위의 책, 24쪽.

33) 崔相哲, 위의 책, 42-43쪽.

34) 崔相哲, 위의 책, 57쪽.

2.2 조선족공민들의 언어문자사용

조선이주민들은 공화국의 성립과 함께 중화인민공화국의 56개 민족의 구성원으로 되었고 중국공민으로 되었다. 1952년, 연변조선족자치구성립 시에 통과한 ‘연변조선족자치구인민정부조직조례’ 제4조는 “연변자치구인민정부는 조선어를 직권행사의 주요 공구(工具)로 하며 통용하는 한문도 동시에 채용해야 한다.”³⁵⁾는 명확한 규정을 세웠다.

60년 동안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각 현·시에는 조선족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가 세워졌다. 그 대표적인 학교는 연변제1중학교, 다음은 민족대학인 연변대학이다. 연변제1중학교는 조선어로 수업을 하는 조선족 고등학교로서 1952년 11월 16일에 설립되었다. 60년간의 학교운영에 있어서 연변제1중학교는 민족의 영재를 양성하는 기지가 되며 중국 일류의 명문학교가 되는 것을 주요목표로 하였다. 연변대학은 1949년에 세워진 민족대학으로서 60여 년 동안 이미 민족소질과 능력을 갖춘 10여 만의 각 민족의 전문인재들을 양성하였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조선족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에서는 모두 조선어로 강의를 하고 있다.

1949년 4월 1일 동북국의 결정에 따라 연길에서 발간된 신문으로는 ‘동북조선인민보’(東北朝鮮人民報)이다. 1954년 동북국이 없어지자 1955년 1월 말부터 ‘동북조선인민보’를 ‘연변일보’(延邊日報)로 개칭되었다.³⁶⁾ 1957년 7월 연길에서 중국공산주의청년단 연변조선족자치주 위원회에 의해 창간된 ‘소년아동’(少年兒童)신문(1962년 10월 ‘연변소년’(延邊少年)신문으로 개제 발간되었다.)³⁷⁾이 있다.

1952년 9월 3일, 연변조선족자치구 성립대회가 연길에서 성대하게

35) 延边朝鲜族自治州概况编写组, 앞의 책, 114쪽.

36) 崔相哲, 앞의 책, 27쪽.

37) 崔相哲, 위의 책, 29쪽.

열렸다.³⁸⁾ 1955년 4월, 성위(省委)와 성인민정부(省人民政府)는 1954년의 헌법규정에 근거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연변조선족자치구를 연변조선족자치주로 변경시키기로 결정하였다.³⁹⁾ ‘문화대혁명’ 시기 자치주의 번역기구는 취소되었고 언어평등정책도 파괴를 당했다. ‘조선어무용론’의 영향으로 각급학교는 강의에서 조선어문 과목을 홀시했거나 취소하였고 ‘연변일보’ 조선문과 연변방송국의 조선어 방송은 한 시기 한어(漢語)로 되었다.⁴⁰⁾

1984년에 제정된 ‘연변조선족자치조례’ 제69조에는 “자치주자치기관은 각 민족간부들이 호상 언어문자를 배우게 하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 한족간부들은 조선언어문자를 배워야 하며 조선족과 기타 소수민족간부들은 자기 민족의 언어문자를 사용하는 동시에 전국에서 통용되는 표준어와 규범화 된 한자(漢字)를 배워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2004년에 제정한 ‘연변조선언어문자조례’ 제2조에는 “조선언어문자는 조선족공민들이 자치권리를 행사하는 주요한 언어문자공구이다. 자치주의 자치기관은 직무집행 시 조(朝), 한(漢) 두 개 언어문자를 통용해야 하며 조선언어문자를 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제3조에는 “자치주자치기관은 조선언어문자사업에서 각 민족의 언어평등원칙을 견지하고 국가의 유관 법률, 법규를 참답게 관철, 집행해야 하며 조선족공민들이 자기의 언어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키는 자유를 보장하고 조선언어문자의 건강과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는 자기민족의 언어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 신문사, 학교, 출판사와 방송영상분야를 갖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창립된 후 주급(州級), 성급(省級), 국가급(國家級) 조선말방송이 개시되면

38) 길림성에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외 1958년 9월 15일에 성립된 장백조선족자치현이 있다.

39) 延边朝鲜族自治州概况编写组, 앞의 책, 108쪽.

40) 延边朝鲜族自治州概况编写组, 위의 책, 15쪽.

서 점차 현(縣), 시급(市級), 향급(鄉級) 조선말 방송도 신속한 발전을 가져왔다.⁴¹⁾ 1951년 8월 19일 연변인민출판사가 창립되었고 1986년 11월 17일에는 연변대학출판사가 창립되었다.

조선족은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자치권을 행사하는 주체민족이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자치기관은 자치주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이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대표대회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입법기관이며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정부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의 행정기관이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대표대회와 각 현·시 인민대표대회에는 선거에 의해 당선된 조선족비례대표들이 참가하며 인민대표대회에서 발표되는 정부사업보고와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업보고 그리고 기타⁴²⁾ 보고들은 조선어와 한어를 동시에 병용한다.

중국조선족들은 반세기 넘게 조선어를 사용해 왔다.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문자사용권은 중국의 헌법과 민족자치법 그리고 기타 법률이 부여한 권리이다. 이 권리는 객관적인 조건으로 되어 중국조선족들이 다른 민족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언어문자로 자치권을 행사하고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관적 조건을 마련해 주고 있다. 바로 언어문자사용권은 언어문자소송권의 기초와 전제로 되면서 언어문자소송권의 보장을 보완해 주고 있다.

41) 1956년 6월에 연길유선방송소, 1953년 1월에는 훈춘현 제1구유선방송소, 1952년 3월에는 돈화유선방송소 1956년 3월 29일에는 화룡현 방송소, 1971년에는 도문시 유선방송소, 1956년 2월 12일에는 용정현 유선방송소, 1950-1953년에는 왕청 유선방송소, 1954-1956년에는 안도현 유선방송소가 설립되었다.

42) 연변조선족자치주 2012년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집행상황 및 2013년도 계획(초안)에 관한 보고, 연변조선족자치주 2012년도 예산집행상황 및 2013년도 예산배정의견에 관한 보고,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검찰원 사업보고, 연변조선족자치주중급인민법원 사업보고.

3. 연변조선족의 언어문자소송권

중국연변조선족 자치주에서 생활하고 있는 조선족들은 중국헌법과 중국의 3대 소송법 그리고 민족자치법과 연변조선족자치조례, 연변조선족언어문자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기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에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조선족소송관계자들의 사건 심리 시公安기관과 검찰원 그리고 법원은 조선어로 입안, 수사, 공소제기,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

연변조선족자치조례 제27조는 “자치주 중급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응당 조(朝), 한(漢) 두 가지 언어문자로 사건을 심리, 검찰해야 하며 각 민족공민들이 자기 민족의 언어문자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조(朝), 한(漢) 언어문자에 능통하지 못한 소송참여자에게는 응당 번역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법률문서는 응당 실제 수요에 따라 朝, 漢 두 가지 언어 혹은 그중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1988년에 제정된 연변조선족언어문자조례 제11조에는 “자치주 각급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응당 조(朝), 한(漢) 두 가지 언어문자로 사건을 심리, 검찰해야 하며 조선족공민들이 자기민족의 언어문자로 소송을 진행하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한언어문자(漢言語文字)에 능통하지 못한 소송소송관계자에게 응당 번역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법률문서는 응당 당지의 수요에 따라 조(朝), 한(漢) 두 가지 혹은 그중 한 가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조선족인민대표들은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고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대표대회에서는 인민대표들이 제기한 의안에 대해 심사처리하고 정부, 법원, 검찰원의 업무를 감독하며 중급인민법원의 원장과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검찰원의 검찰장을 선거한다. 마찬가지로 연변조선족자치주내의 각 현시의 조선족인민대표들은 인민대표들이 제기한 의안에 대해 심사, 처리하고 각 현,

시의 정부, 법원, 검찰원의 업무를 감독하며 인민법원의 원장과 인민검찰원의 검찰장을 선거한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중급인민법원의 원장, 연변조선족자치주검찰원의 검찰장, 각 현시의 법원원장, 검찰장 중에는 많은 조선족원장과 조선족검찰장이 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내에는 많은 조선족 법관과 검찰관들이 조선족 소송관계자들의 사건을 담당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민족의 언어문자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연변 조선족들은 법정에서 자기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고 제때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따라서 기타 민족들과 동등한 소송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중국의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보면 입안, 수사, 공소제기, 심판, 집행이 있다. 중국 형사소송법 제3조에는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 구류, 구속의 집행, 예심(豫審)은 공안기관이 책임지고 검찰, 구속의 비준(批准), 검찰기관이 직접 수리한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의 제기는 인민검찰원이 책임지며 심판은 인민법원이 책임진다는 규정이 있다. 공안기관, 검찰원, 법원은 조선족범죄혐의자, 피고인에 대한 신문 그리고 피해인과 증인에 대한 심문에서 그들의 의향에 따라 자기의 민족언어와 민족문자를 사용하는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다.

입안, 수사에서 공안기관(혹은 검찰원)은 소수민족 소송관계자들에게 조선족언어문자사용의 선택권을 고지하며 조선족언어문자사용권을 선택한 조선족소송관계인들의 사건 필록(筆錄)은 조선어로 작성된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에서 기소 이송한 사건에서 조선족언어를 선택한 소송관계인들에 대해 조선어로 사건 필록을 하며 조선어로 기소장을 작성한다. 조선족피해자의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내린 시 인민검찰원은 조선어로 작성된 불기소결정서를 피해자에게 송달한다. 피해자가 불복한다면 결정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직근 상급 인민검찰원에 조선어로 신고(申告)하여 공소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공소제기가 된 사건에 대하여 심사한 후 명확한 범죄사실이 있고 아울러 증거목록, 증인명단과 주요 증거복사물 또는 사진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심판을 결정한다. 연변조선족 내의 법정심리과정에 있어 소송관계자와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모두 조선어를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형사소송법 제184조 “인민법원이 공소사건을 심판하는 경우에 인민검찰원은 인원을 법정에 출석시켜 공소를 유지한다.”는 규정에 의해 법정에 출석한 공소인도 조선어를 사용하여 공소를 진행한다. 다음, 형사소송법 제32조의 “범죄혐의자와 피고인은 스스로 변호권을 행사하는 이외에 1명 내지 2명에게 위탁하여 변호인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조선족혐의자와 조선족피고인은 조선족변호인이거나 변호사⁴³⁾ 혹은 조선어에 능숙한 변호인이거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선임 받은 변호인이거나 변호사는 구금중인 혐의자를 접견하여 범죄혐의자로부터 사건과 관련한 상황을 조선어를 사용하면서 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조선어로 변호를 진행 할 수 있다. 최후로 심판장이 변론의 종결을 선포한 후에 형사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할 권리가 있다. 이때에도 형사피고인에게 자기의 민족언어인 조선어로 된 최후진술이 허용된다.

중국의 재판기관은 4급 2심 중심제⁴⁴⁾를 채택하고 있다. 중국의 법원은 크게 최고인민법원, 지방인민법원으로 되어 있고 지방법원은 고급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기층인민법원으로 되어 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길림성은 하나의 지방행정지역이며 자치지역이다. 연변조선족자치주에는 중급인민법원과 각 현·시⁴⁵⁾ 법원이 있다. 공안기관과 검찰원

43) 현재 조선족들은 자기의 민족언어로 사법고시에 참가하여 변호사자격증서를 받을 수 있다.

44) 중국에서는 건국초기에 부분지역에서 3심 중심제를 실시하면서 2심판결에서의 착오적인 판결을 감소시켜 좋은 효과와 작용을 얻었다 그 뒤로 사건 심리의 효율과 소송관계자들의 사정으로 2심 중심제로 바뀌었다.

45) 연길시, 도문시, 훈춘시, 돈화시, 용정시, 화룡시, 왕청현, 안도현. 연변조선족자치

의 시스템도 법원과 마찬가지로이다.

중국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관할에는 입안(立案)관할과 심판관할이 있다. 심판관할에서 형사소송법 제19조⁴⁶⁾의 규정에 따라 기층법원은 제1심법원으로서 보통 형사사건들을 심리한다. 중국의 심판제도는 2심 중심제이다. 상소 혹은 항소가 제기 되는 경우라도 중급인민법원에서 제2심 사건을 심리하게 되기 때문에 사건은 연변조선족자치주 내에서 종결을 짓는다. 이 소송과정에서 사건소송관계자가 조선족일 경우 자기의 언어문자를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언어와 조선문자를 사용하여 소송을 시작하고 끝낼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조⁴⁷⁾의 규정에 따라 중급인민법원의 제1심 사건에서 상소 혹은 항소가 제기되면 제2심은 고급인민법원⁴⁸⁾으로 된다. 이 경우에도 조선족들의 언어문자소송권이 허용된다.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조선족 형사피고인은 법정조사와 법정변론 그리고 상소, 항소에서 조선어를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송관계자, 변호인, 증인, 감증인 할 것 없이 모두 조선어로 진술하고 변론하며 조선문자로 소장을 만든다. 소수민족 소송참여자가 당지에서 통용되는 언어문자에 능통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면公安기관과 검찰원, 법원은 통역을 해 주며 조선족 소송관계자들의 사건에 대해 조선어로 된 기소서, 판결서, 공고, 포고와 기타 문건들을 작성한다.

연변조선족자치주 내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과 행정소송도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조선족의 언어문자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주정부 소재지는 연길시이다.

46) 제19조 기층인민법원은 일반형사사건의 제1심을 관할한다. 다만 본법에 의하여 상급 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47) 제20조 중급인민법원은 아래 열거된 상황의 형사사건의 제1심을 관할한다. 1)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과 테러사건, 2) 무기징역,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일반 형사사건이다.

48) 길림성장춘시의 고급법원을 가리킨다.

연변조선족자치주 내에서 조선족소송관계자들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도 조선어로 기소장과 상소장 등을 만들 수 있으며 증거를 제공하고 법정변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자치주 내의 변호사는 조선어로 변호하고 법원에서도 조선어로 된 판결서를 작성하면서 조선족 소송관계자들의 소송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성립 60주년이 된다. 그동안 중국조선족들은 헌법, 민족자치법과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의 규정 그리고 기타 법률규정에 따라 자기의 언어문자로 소송에 참가하였다. 바로 연변조선족들의 언어문자사용권에 대한 보장 그리고 그에 따르는 언어문자소송권의 보장에서 중국 헌법과 민족자치법 그리고 기타 법률규정의 엄숙성과 권위성이 나타나고 있다.

IV. 나가는 말

중국에서 소수민족지역자치제도는 기본정치제도로써 소수민족자치지역에서 진행되는 소송에서 각 소수민족들이 자기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의 권리로 보장되어 있고 법원, 검찰원에 있어서는 하나의 의무로 이행되고 있다. 이처럼 헌법에 의거한 소수민족언어문자사용원칙은 소송상에서도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에 사법실천에서 중시를 받아 왔고 오늘까지 집행되어 왔다.

중국 조선족들은 조선반도에 이민해 온 조선인들의 후손들이다. 그들은 19세기 자연재해를 피하고, 20세기의 일본식민지통치로 인하여 중국으로 이주한 후 주요하게 청조,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을 경과하였고 항일전쟁, 해방전쟁, 토지개혁 등 중국혁명에 참가하면서 자기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보존하여 왔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기 전부터 연변 조선족들은 기타 소수민족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언어문자로 정치, 경제,

문화 활동 그리고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에도 참가하였다.

소수민족지역자치제도의 연구와 실시는 중국의 민족이론연구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여 왔으며 성과도 많이 거두었다. 건국 후 중국에서는 인권 측면에서 헌법과 민족자치법 그리고 기타 법률로 소수민족들의 언어문자사용권과 언어문자소송권을 보장해 주었다. 이는 중국의 전반 정치·경제·문화·사회보장 등 여러 면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법제도로서 공평, 정의가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첫째, 소수민족언어문자권의 내용과 그 규범에는 지도적·강령적·원칙성적인 규정이 많기 때문에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법실천에서 보면 소수민족의 인구가 감소되고 대신 문화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소송에서 언어문자사용권에 대한 중시가 낮아지고 있다. 셋째, 소수민족지역자치법과 소수민족지역자치제도의 보완을 위해서라도 소수민족언어문자에 대한 보호법이 필요로 되고 있다.

각 민족은 자기의 언어문자를 배우고 사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자유와 평등이 인권의 중요한 내용이라면 인간의 생활에서 떠날 수 없는 언어문자의 사용권과 소송권도 인권보장의 한 개 내용이라 하겠다.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소수민족에게 있어서 언어문자의 사용권은 하나의 권리로서 언어문자사용권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언어문자소송권에 대한 보장도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소수민족언어문자와 한언어문자(漢言語文字)는 중국에서 장기간 함께 공존해 왔으나 서로 대체할 수 없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의 소수민족들은 소송에서 자유롭게 자기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

(투고일 2012년 12월 31일, 심사(의뢰)일 2013년 1월 25일 게재확정일 2013년 2월 12일)

주제어: 소수민족지역자치제도, 소수민족지역자치법, 소수민족언어문자사업
조례, 소수민족언어문자사용권, 소수민족언어문자소송권

참고문헌

1. 단행본

- 金柄镐, 民族理论通论, 中央民族大学出版社, 2007.
- , 民族纲领政策文献选编(第一编), 中央民族大学出版社, 2006.
- 周叶中, 宪法, 高等教育出版社, 2010.
- 吴杰, 宪法教程, 法律出版社, 1993.
- 吴宗金, 中国少数民族区域自治法学, 法律出版社, 2012.
- 崔相哲, 中国朝鲜族新闻出版研究, 香港亚洲出版社, 2007.
- 延边朝鲜族自治州概况编写组, 延边朝鲜族自治州概况, 延边人民出版社, 1984.

2. 논문

- 爱如娜, “少数民族诉讼语言文字权的法律保护”, 内蒙古农业大学学报 2011年 第1期, 1-32쪽.
- 傅懋勳/孙竹, “关于使用和发展民族语言文字的问题”, 民族研究 1990年 第3期, 1-3쪽.

[Abstract]

Research on China's Minority Language Rights of Action also on the Yanbian Chinese-Korean Language Rights

Hai-Yu Yan*

For historical and geographical reasons, political, economic, cultural and other aspects of development of China's ethnic minority areas are backward when compared with other regions, and development of the minority regions also differ. In order to narrow the gap between minorities and guarantee equal rights for weak nationalities, ethnic autonomy system was exercised in China. That is, minorities in ethnic autonomous areas of China, including Chinese-Korean, exercise their autonomous right, and they can use national language in the proceedings.

Language use rights are basic human rights. It has characteristics of collective, regional, independent and exclusive. However, respect for the right to use language as important guarantee of each national equity, justice and freedom, cannot be denied or infringed. From a human rights perspective,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onstitutio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ational Autonomy Act and other laws can be used to protect the social and legal status of national minorities. From then on, in China, minority language rights of action have legal protection.

System of ethnic autonomy is a basic political system of China. In the

* Professor, School of Law, Yanbian University, China

proceedings, it is a right of minorities to use their own language in ethnic minority areas, and it is an obligation that judges and prosecutors use the local minority language.

Key Words : system of minority nationalities regional autonomy, law of national autonomy region, minority language work regulations, minority language rights, minority language rights of action